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12.] [국토교통부령 제547호, 2018. 10.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건설기술자) 044 - 201 - 3555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설계제도) 044 - 201 - 3566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환경관리비) 044 - 201 - 3559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품질관리) 044 - 201 - 3579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건설안전) 044 - 201 - 3586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기타) 044 - 201 - 355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건설감리) 044 - 201 - 35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5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5. 7. 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 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

제7조(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자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15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건설기술자의 육성 등

제16조(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⑨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12.>

③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기술용역 등

제21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

수·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2.>

1. 삭제<2018. 10. 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22조(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이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자본금 또는 장비의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2.>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승계)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재발급,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②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2.>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0조(기술·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상주기술자"라 한다)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기술지원기술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 7. 4.>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7조(건설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5. 1. 29.>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9.>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건설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 29.]

제38조의2(건설기준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9.]

제39조(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9., 2016. 3. 7.>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6조(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6. 7. 4.>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6. 3. 7.>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6. 3. 7.>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6. 3. 7.>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2016. 7. 4.>
3. 철거공사

제50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관리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제51조(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4조(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 전단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신설 2016. 7. 4.>

1. 관계 행정기관
2.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제55조(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6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2.>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확인할 수 있다.
⑤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0. 12.>
1. 제3항에 따라 작성·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⑥ 삭제<2018. 10. 12.>
⑦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0. 12.>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 7. 4.>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3. 7., 2016. 7. 4.>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4.>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7. 4.>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8. 6. 18.>
[시행일 : 2019.1.1.] 제61조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삭제 <2016. 3. 7.>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3. 7.>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2016. 3. 7.>
⑤ 삭제<2016. 3. 7.>
⑥ 삭제<2016. 3. 7.>
[제목개정 2016. 3. 7.]

제6장 보칙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조신설 2018. 10. 12.]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4호,2014.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제28조제2항제2호 다목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요예측 자료 등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완료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영 부칙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2.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와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3.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② 법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 및 영 부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영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부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16.5.25>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호 및 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등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하며, 같은 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1)(나)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로 한다.

⑦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로, 같은 목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중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의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수석감리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등급에 해당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으로 한다.

⑧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경력증"으로 한다.

⑨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8호,2015.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호,2015. 7. 1.>(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5호,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호,2016. 5.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호,2016.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6. 8. 12.>(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③부터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3호,2018. 1. 18.>(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47호,2018.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1조·제23조·제63조의2,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자의 신고·변경신고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변경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영업을 양도를 하거나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 간 합병을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된 처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1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2개월	
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	업무정지 12개월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법 제24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상 받은 경우	제1항제3호	2개월	2개월	2개월
라.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정당한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손해액이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거나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업무정지 24개월		
2)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초과 3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3) 손해액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4)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		
5)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7호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준용

[별표 2]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50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업체의 전차(前次) 용역 등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5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하중 등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범위,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제28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7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방법	1) 수행계획	15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2) 수행방법	15	1)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2) 예상 문제점 및 대책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항목
가. 설계팀의 경력·역량		30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방법 및 기술향상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15	1)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별표 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60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빈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가점·감점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사전자격심사 시에는 종전에 발행한 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정하여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5. 가점과 감점을 상계(相計)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중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6. 건설사업관리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점하거나 감점할 수 있다.
7. 교체빈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는 용역에 한정하여 평가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용역의 특성에 따라 교체빈도의 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분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과업 수행 조직	소계	55	
	1) 조직의 역량	4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등 평가
	2) 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이해도 및 자질의 적정성 평가
	3) 인원투입계획	5	조직 구성, 업무 분장의 적정성,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원투입계획성 등 평가
나. 과업 수행 세부계획	소계	45	
	1) 과업에 대한 이해도	5	건설공사의 특성 및 발주청 요구사항 분석,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 평가
	2) 시공 전(前) 단계의 사업관리	15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일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3) 시공 이후 단계의 사업관리	20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 일반,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의 수행방법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평가
	4) 기술 활용	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과 활용, 기술자료·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 지원체계 효율성 등 평가

3.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계	70	
	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실적·경력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2) 유사용역수행 실적	10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3) 신용도	15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벌점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계	30	
	1) 수행계획서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3)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별표 4]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1. 입찰 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45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0	1)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2) 재정상태 건실도에 따라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에 따라 평가

비고

1.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세부 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 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2. 기술자평가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평가 대상 용역)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범위	평가방법
가. 조직의 경험 및 역량	소 계	70	
	1) 기술자 등급·경력	35	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
	3) 업무 중첩도	10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4) 직무 적정성	5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반영 등
나. 수행 계획 및 방법	소 계	30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 해당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책임기술자 발표 및 면접	10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별표 5] <개정 2016.3.7.>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50㎡ 이상	가. 고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가. 중급기술자 1명 이상 나.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	20㎡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를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1)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4)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frac{(\text{상각률}+\text{수리율})\times\text{기계가격}}{\text{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times\text{내용연수}}\times\text{장비가동시간}$$

※ 기계가격은 구입 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상각률	수리율
모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게 이 지	1.0	0.6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

7)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계상한다.

8)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역	비고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나)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다)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라)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마)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가)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나) 교육자료 준비비 다) 품질 관련 행사비 라) 건설기술자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가)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 내부 품질검사비 다)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비용	초과할 수 없다.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7] <개정 2016.3.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1.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요율
토목	도로	0.9%
	플랜트	0.4%
	지하철	0.5%
	철도	1.5%
	상하수도	0.5%
	항만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1.8%)
	댐	1.1%
	택지개발	0.6%
	그 밖의 토목공사	0.8%
건축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0.7%
	주택(신축)	0.3%
	그 밖의 건축공사	0.5%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損料)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른다.

$$\frac{(\text{상각률} + \text{수리율}) \times \text{설비가격}}{\text{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times \text{내용연수}} \times \text{설비가동시간}$$

※ 상각률 및 수리율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해당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硝子類)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규모, 지역특성에 따라 가목의 요율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점검비, 인증비 및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환경보전비에서 12% 상당액을 그 밖의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

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의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라 한다)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집·운반비: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데에 드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2) 중간처리비: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파쇄·압축·중화·탈수·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3) 최종처리비: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 후 잔여폐기물을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잔여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현장의 여건과 폐기물의 성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다.

3. 그 밖의 사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

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1.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연장 신청·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

구분	금액(1건당)
신청수수료	10,000원
1차심사수수료	2,000,000원
2차심사수수료	1,500,000원

비고

1.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2. 1차 및 2차 심사수수료는 심사를 신청하는 때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3.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5·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5.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79조제4호 관련)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r>
<tr><td>가. 기본수수료</td><td>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td></tr>
<tr><td>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td><td>1)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table>
<tr><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필요인원</th><th rowspan="2">소요기간</th></tr>
<tr><th>특급기술자
(5급 상당)</th><th>고급기술자
(6급·7급 상당)</th></tr>
<tr><td>1급</td><td rowspan="4">1명</td><td rowspan="4">2명</td><td>3일</td></tr>
<tr><td>2급</td><td>2일</td></tr>
<tr><td>3급</td><td>1.5일</td></tr>
<tr><td>4급</td><td>1.5일</td></tr>
</table>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td></tr>
<tr><td>다. 인증심의위원 수당</td><td>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td></tr>
<tr><td>라. 일반관리비</td><td>(가+나+다)의 5%</td></tr>
</table>

비고

1.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2.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사후관리 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목, 나목 및 라목을 준용하되, 나목의 공장심사원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

명으로 하고, 출장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3. 영 제1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장인증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79조제4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3호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4.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지정번호	번호		지정일
신청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기술 지정 확인 →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신기술 명칭 및 개발자	명칭	지정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① 일련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명	*④ 업태 분류	*⑤ 발주자 분류	*⑥ 기술 분야	*⑦ 지역	*⑧ 계약 형태	*⑨ 계약 관계	*⑩ 활용 형태	⑪ 계약 연월일	⑫ 착공 연월일	⑬ 준공 연월일	⑭ 해당 연. 계약액 또 이월금액
합 계													

첨부서류	1. 건설공사의 경우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 용실적 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 다.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 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일련번호는 신기술별로 적습니다.
2.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의 해당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3. 전년도 미기성액부터 작성하고, 해당 연도 계약분을 계약일순으로 적고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해당 연도 활용금액은 발주자 공급자재액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210㎜

※④ 업태분류	※⑤ 발주자 분류			
1. 종합건설업 2. 전문건설업 3. 기술용역(건축사·기술사무소 및 유지관리·감리 등) 4. 공기업·준정부기관 5. 연구소 6. 개인 7. 그 밖의 업태	**1. 중앙정부** 1-1. 국토교통부 1-2. 국방부 1-3. 환경부 1-4. 그 밖의 기관	**2. 지방자치단체** 2-1. 서울특별시 2-2. 부산광역시 2-3. 대구광역시 2-4. 인천광역시 2-5. 광주광역시 2-6. 대전광역시 2-7. 울산광역시 2-8. 세종특별자치시 2-9. 경기도 2-10. 강원도 2-11. 충청북도 2-12. 충청남도 2-13. 전라북도 2-14. 전라남도 2-15. 경상북도 2-16. 경상남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2-18.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그 밖의 공기업·준정부기관	**4. 교육기관** 4-1. 서울특별시교육청 4-2. 부산광역시교육청 4-3. 대구광역시교육청 4-4. 인천광역시교육청 4-5. 광주광역시교육청 4-6. 대전광역시교육청 4-7. 울산광역시교육청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4-9. 경기도교육청 4-10. 강원도교육청 4-11. 충청북도교육청 4-12. 충청남도교 4-13. 전라북도교 4-14. 전라남도교 4-15. 경상북도교 4-16. 경상남도교 4-17. 제주특별자 4-18. 그 밖의 교

※⑥ 기술분야		※⑦ 지역	※⑧ 계약형태	※⑨ 계약
(건축)	**1.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방수, 미장, 기계설비, 설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세종특별자치시 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18. 해외	1.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 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공사 4. 그 밖의 계약
(토목)	**2. 도로**: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도로설계, 철도, 공항			
	3. 교량: 교량기초, 교량구조 및 시공			
	4. 토목구조 및 시공: 토목구조, 토목시공, 구조물보수보강, 토목방수, 설계			
	5. 항만 및 호안: 항만, 호안			
	6. 토질 및 지반: 토질 및 기초, 지반, 터널, 발파, 항타 토질시험			
	7. 상하수도: 관로, 준설, 설계			
(환경)	**8. 환경 및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매립장설치, 하수처리, 대기, 소음 및 진동, 그 밖의 환경 관련 분야			
(조경)	**9. 조경**: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그 밖의 분야)	**10. 그 밖의 분야**: 측량, 지형공간정보, 전자정보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신기술 활용지위 []개발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기타	
용역내용	용역명	
	용역계약금액(천원)	용역지분율(%)
	용역기간	
공사내용	신기술 지정번호	① 발주형태
	공사명	
	계약일 / 착공일	준공(예정)일
	해당 공사 총 계약금액(천원)	② 해당 공사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총 계약금액(천원)	③ 해당 연도 신기술 적용 금액(천원)
	해당 연도 신기술 기성 실적(천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수급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인)	전화번호
	주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을 활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의사항

1. ①발주형태 : 일반(1), 지명(2), 제한(3), 수의(4), 대안입찰(5), 설계시공일괄입찰(6), BTL(7), 민간공사(8), 기타(9) 중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 번호를 적습니다.
2. ②,③의 신기술적용금액은 신기술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3. 실적 증명은 발주청이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증명서(발급) 신청서 확인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	실적 승인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발주청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명칭	명칭		지정번호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신기술내용 (요약)			
신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수수료 10,000원 (수입인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보호기간 연장 고시 또는 불인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술자료 납본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① 번호	② 자료명	③ 저자명	④ 발행자명 (제작자명)	⑤ 발행 연월일	⑥ 형태
⑧ 합계	총 건				

위의 건설기술자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납본하며, 2차적 저작물 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건설기술자료 이용자에 대한 이용허락 권한을 위임합니다.

납본인(기관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작성방법

② 자료명란에 연속 간행물(잡지)인 경우에는 권호/통권 및 발행빈도를 함께 적습니다.

⑥ 전자파일의 경우 파일형태와 페이지, 인쇄자료일 경우 페
⑦ 국제표준자료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적어주십시오.

2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위 법인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생년월일:

소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육이수등급: 직무분야:

교육기간: . . . ~ . . . (시간)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토교통부 또는 교육기관

수신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교육·훈련 상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교육이수 현황표

과정명	기간(일)	기본교육 (35시간 단위)	전문교육		비고
			35시간 과정	()시간 과정	
		명	명	명	
총 계		명		명	

2. 교육이수 명단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교육종류	직무분야	교육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붙임 :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교육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0. 12.>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사진 (3.5cm×4.5cm) 또는 사진인쇄
		한자		
		영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국적	
	주소			
	군복무	① 기간 ~	구분 []미필 []면제 []기타	
② 직무분야		※ ②란 직무분야의 예: 토목, 건축, 기계, 안전관리, 환경 등 영 제4조 별표 1의 제3호의 직무분야를 적습니다.		

③ 학력	재학기간	졸업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 . ~ . . .			
	. . . ~ . . .			

④ 국가기술자격	합격일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 . .		
	. . .		

⑤ 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회사명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 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3.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하며,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5.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6. 증명사진(3.5cm×4.5cm) 1장(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사진을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고 시 신고인의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군복무기간은 자격대여 및 경력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 실제 군복무기간을 적으셔야 합니다.
2. ②란의 직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적은 직무분야는 향후 건설기술자 통계 등에 활용됩니다)
3. ③란의 학력사항에 최종 학력과 건설기술 관련 학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의 국가기술자격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5조제1항 별표 1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적습니다.
5. ⑤란의 근무처는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0. 12.>

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④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⑦ 참여기간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자(청)	
	⑩ 직무분야	⑪ 전문분야	⑫ 공사종류	⑬ 담당업무	⑭ 직위	⑮ 책임정도	⑯ 공법	
	⑰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⑱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⑲ 착공일	⑳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 ⑰ 공사(용역)개요, ⑱ 공사(용역)금액, ⑲ 착공일 및 ⑳ 준공일(예정일)란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용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⑰⑱⑲⑳란은 의무 신고사항은 아니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수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으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은 소속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종(예: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도장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 등)과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 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 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감리/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이 경우 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자(청)는 해당 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0. 가. ⑩란 및 ⑪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나. ⑪란의 전문분야는 구체적인 참여사업명이 없는 경력[예: 본사(견적실) 등]기간에는 적을 수 없습니다.
11. ⑫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중 대분류 및 소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직위는 해당 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어야 합니다.
14. ⑮란의 책임정도는 건설공사 등에 참여한 책임정도에 따라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3호나목 책임정도란 중 하나를 적으면 됩니다. 다만, 책임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공사규모 등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개요 : 도로확장 L=00Km, B=0m(0차선), 사장교 : L=00m, B=0m, 터널 0개소 : L=0Km, B=0m 등
 ※ 공사(용역)개요 기재는 주요 공종만 최대 70자 이내(공란포함)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7. ⑱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용역)금액: 500백만원
18. ⑲란의 착공일 및 ⑳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9. 기술경력의 기재사항 중 ⑦, ⑧, ⑩, ⑬, ⑭란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0. 12.>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인적사항	①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② 주소		
소속회사	③ 회사명	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④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
	⑤ 입사일	⑥ 퇴사일	전화번호
국외 기술경력	⑦ 참여기간 . . . ~ . . .	⑧ 참여사업명	
	⑨ 발주국	⑩ 발주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기타	
	⑪ 직무분야		⑫ 전문분야
	⑬ 담당업무(책임정도)		
	⑭ 공사종류(주 공종)	⑮ 직위	⑯ 공법
	⑰ 공사지역(국가명)	⑱ 착공일 . .	⑲ 준공일(예정일) . .
	⑳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 포함)		㉑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공사(용역)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 직인

첨부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또는 국외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건설기술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합니다)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입·퇴사일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자료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수의 국외 경력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외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외 경력확인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외국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5.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서명 또는 인)은 건설기술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타인이 또는 날인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②란의 주소가 이미 신고한 주소에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를 적고 그 뒤에 (변경으청)이라고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 ③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④란의 해외건설업종(등록번호)는 소속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외건설관련업(예: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산업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전문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업 등) 해당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으면 되며, 건설업종을 1개 이상 소지하고 있는 경우 대표업을 적으면 됩니다.
5. ⑤란의 입사일은 소속회사의 입사일을 적으면 됩니다.
6. ⑥란의 퇴사일은 소속 회사의 퇴사일을 적으면 되고, 현재 근무 중인 경우에는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7. 가. ⑦란의 참여기간은 해외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이하 "해외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적으며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착공일과 준공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착공일 이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계획·조사 등) 또는 준공일 이후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유지관리 등)는 기간 및 담당업무를 분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나. 시공 등 해외현장에 상주해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타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 중"으로 표기(이 경우 경력확인서 발행일까지 기술경력은 인정받게 됩니다)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 중"으로 신고한 기술경력을 종료할 때에는 해당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참여기간 외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야 합니다.

 작성 예) 201x년 1월 25일 시작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근무 중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 참여일인 1월 10일부터 경력신고일인 1월 25일까지 경력 인정)

 201x년 12월 25일 종료신고

 참여기간: 201x. 1. 10 ~ 201x.12. 20(이 경우 시작신고일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종료된 12월 20일까지 경력 추가인정)

8. ⑧란의 참여사업명은 건설기술자가 실제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계약명 또는 실적증명서(「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된 계약명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해 제출된 실적증명서를 말합니다)에 표기된 공사명을 적으면 됩니다.
9. ⑨란의 발주국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발주처(기관)가 소속된 국가명을 적으면 됩니다.
10. ⑩란의 발주자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명을 기재하시고 기관의 성격에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1. ⑪란 및 ⑫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건설기술자가 실제 수행한 직무 및 전문분야(선택한 직무분야 범위내의 전문분야를 선택하여 적어야 합니다)를 선택하여 적으면 됩니다.
12. ⑬란의 담당업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이하 "등급인정기준"이라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업무란 및 나목의 책임정도(해당하는 자에 한정합니다)란을 참고하여 적으면 됩니다.
13. ⑭란의 공사종류(주 공종)는 등급인정기준 별표 3 제4호 가목 건설공사의 종류 또는 나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적고, (주 공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주요공종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예) 공사종류: 공항(활주로)

14. ⑮란의 직위는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에 참여할 당시의 직위를 적으면 됩니다.
15. ⑯란의 공법은 해당 건설공사 등에 적용된 공법을 적으면 됩니다.
16. ⑰란의 공사지역(국가명)은 해당 해외건설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진 국가명과 시(市)까지 적으면 됩니다.
17. ⑱란의 착공일 및 ⑲란의 준공일(예정일)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의 용역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18. ⑳란의 공사(용역)개요는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의 공사개요를 70자 이내(공란포함)에서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작성예) 해외공사(용역)개요: 본 공사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의 활주로 증설 공사로 주 활주로 2끗(총 1.4㎞)을 연장하였음

19. ㉑란의 공사(용역)금액은 건설기술자가 참여한 해외건설공사 등의 사업비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공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0. 12.>

건설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공법	
공사(용역)개요(70자 이내 공란포함)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첨부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3.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5. 25.>

(6쪽 중 제1쪽)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180㎜(OCR 용지 105g/㎡)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재발급사유(훼손·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속히 갱신 받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5.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가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설기술경력증

증명사진 (3.5cm×4.5cm)	발급번호 OOOO	발급일 OOOO
	성명 OOO	생년월일 OOOO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합니다.

수탁기관의 장 인

■ 기술등급 발급번호: 성명 :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날짜	분야	기술등급	확인

■ 국가기술자격 발급번호: 성명 :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일

■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 교육훈련 발급번호: 성명 :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기간	과정명	기관명	교육기관의 장(인)

■ 제재사항 발급번호: 성명 :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 신규 [] 갱신 [] 재발급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사유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발급 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신규·갱신·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사진(3.5cm×4.5cm) 1장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최종 학력	기술등급	발급일	발급구분	담당자확인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미반납)으로 표기합니다.

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 · 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국가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학력	졸업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위

교육훈련	교육기간	교육기관명	과정명	교육인정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3), 나목3) · 4) 및 다목3)에 따른 의무교육 이수 시간
- 설계 ·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

상훈	수여일	수여기관	종류 및 근거

벌점 및 제재사항	벌점			
	제재일	종류	근거	제재기관

근무처	근무기간	상호	근무기간	상호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명 :

(3쪽 중 제2쪽)

1. 기술경력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 발주자 / 공사(용역)개요	공사 종류 / 공법	직무 분야 / 전문 분야 / 책임 정도	담당 업무 / 직위 /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비고
~					
~					
~					
~					
~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성명 :

(3쪽 중 제3쪽)

2.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통보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감리용역 참여 경력만 해당합니다.

참여기간 (인정일)	사업명	공사 종류	직무 분야	담당 업무	비고
	발주자	공법	전문 분야	직위	
	공사(용역)개요		책임 정도	공사(용역)금액 (백만원)	
~					
~					
~					
~					
~					

※ 공사(용역)개요 및 공사(용역)금액은 발주청(인·허가기관)의 확인으로 신고된 사항만을 표기하며, 미신고된 란은 생략 가능합니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기술지원: 일[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일,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일]

○ 감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상주: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기술지원: 일[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 안전관리 업무 수행기간: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최근 1년간) 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3. 배치금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철수한 경우만 기재)

용역명	근무형태	직책	근무기간	배치금지 기간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0. 1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첨부서류	등록 [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시·도지사 통보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또는 평가기관(품질검사분야에 한정)		수탁기관		시·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1.29.>

(3쪽 중 제1쪽)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시험실 (필요시)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겸업 사항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 금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필요시)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기술자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자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3쪽 중 제3쪽)

기록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 사항	변경 내용	기록자

등록증 재발급

발급일	사유	발급일	사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상호 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

소속 국가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 연월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재발급 신청사유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 기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시·도지사 통보	→	발급
신청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시·도지사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용역업 []휴업 []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년 월)	폐업일 . . .
	휴업·폐업 사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휴업·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폐업신고는 제외)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용역업 양도·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등록번호

양수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건설기술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통보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5. 25.>

건설기술용역업 법인합병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등록번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전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수행 중인 건설기술용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서면심사	→	확인(현장)	→	통보
신고인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① 용역종류 및 범위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건설사업관리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기타	[] 감리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진단 [] 기타()

용역명		② 공종	
사업위치		③ 사업규모	
④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
	공동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
입찰방식	[] 기술·가격분리입찰방식 [] 지명경쟁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방식 [] 수의계약 [] 기타()		
선정방식	[] PQ평가방식 [] 기술자평가방식 [] 기술제안서평가방식 [] 기타()		
계약형태	[] 원도급/단독계약 [] 원도급/공동계약 [] 기 타	낙찰률	%
계약방식	[] 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		
대가산출	[] 공사비요율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기 타		

⑤ 계약 및 이행내용

구 분	계(백만원)	(회사1)	(회사2)	계약 또는 이행기간	비고
전 체				. . ~ . .	
기성분				. . ~ . .	
금차 계약분				. . ~ . .	
향후 잔여분				. . ~ . .	

2. 공사개요(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하여 작성)

⑥ 총공사비	백만원(관급자재비 백만원 포함)	공사기간	. . ~ . .
계약금액	백만원(낙찰률 : %)	시 공 자	(대표자)

3. 계약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조사·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4호가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km, 폭()m　　- 교량: 길이()m, 폭()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세대, 연면적()㎡, 층수()층　　- 건축물: 연면적()㎡, 층수()층
4. ④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 및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과 2. 공사개요 항목 작성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⑤란의 계약 및 이행내용의 기성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현재까지 완료된 연차사업내용을 기재하고, 연차 구분없이 총액계약만 체결한 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지급된 기성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며, 금차계약분은 연차별 계약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전체는 향후 잔여분을 포함한 합계이므로 금액은 상호간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⑥란의 총공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로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낙찰률로 환산한 예정금액)을 기재합니다.
7. 계약변경내용 통보 시에는 용역종류 및 범위, 용역명과 변경된 항목만 기재하고, 변경사항은 계약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용역 준공 통보 시에는 계약 및 이행내용 중 전체란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9. 공사기간, 계약 또는 이행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10.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변경)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 현황

① 용역종류 및 범위	[]계획·조사·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건설사업관리	[] 설계 전 단계 [] 기본설계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의무, □ 임의) [] 구매조달 단계 []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시공 후 단계
	[] 기타	[] 감리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 시험·평가 [] 품질관리 [] 안전점검·진단 [] 기타()

용역명				②공종	
사업위치			③ 사업규모		
④ 계약금액			⑤ 계약기간	. . ~ . .	
⑥ 계약자	주 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
	공동계약자:	(대표자)		지분율	%

2.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술자등급	용역참여기간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변경내용

변경구분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의 용역종류 및 범위는 계획 · · 조사 · 설계, 건설사업관리, 기타 중 종류를 선택하고, 해당 용역에 포함되는 업무범위 전체를 선택합니다.
2. ②란의 공종은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4호가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3. ③란의 사업규모란 기재 예시
 - 도로: 확장 및 포장()km, 폭()m
 - 교량: 길이()m, 폭()m, 교량형식 등
 - 공동주택: ()세대, 연면적()㎡, 층수()층
 - 건축물: 연면적()㎡, 층수()층
4.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⑥란의 계약자(지분율 포함)은 전기 · 통신 · 소방 등의 건설공사가 아닌 부분은 제외하고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5. ④란의 계약금액 및 ⑤란의 계약기간은 연차별 계약건의 경우 전체 금액 및 기간을 기재하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참여기술자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변경내용 통보 시 참여기술자 현황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의 변경 후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계약기간, 용역참여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기재합니다.
9.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철수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용역개요

용역명		계약기간	. . ~ . .
용역구분	[]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의무, □ 임의 / □ 전체, □ 부분)] [] 감리 (□ 공동주택, □ 다중이용건축물)		
계약자		대표자	

2. 배치확인

배치기간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① 직무 분야	근무형태 (상주/기술지원)	② 직책	③ 공사종류	④ 업무분야	소속회사
. . ~ . .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

소속회사	성명	생년월일	직책	지정일자	종료일자

3. 철수확인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⑤ 철수 구분 (교체/완료)	배치기간 (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	철수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정사항

성명	생년월일	항목	당초	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통보할 내용)
			〃	〃
			〃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 방법
1. ①란의 직무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직무분야 중 해당 용역 참여 직무분야를 기재합니다. 2. ②란의 직책은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의 경우 '책임/분야'로, 공동주택 감리용역의 경우 '총괄/분야/신규'로 구분하며,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보조)'로 적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현황에 추가로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상주기술자에 한정합니다). 3. ③란의 공사종류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4호가목의 건설공사의 종류(대분류) 중 해당 종류를 기재합니다. 4. ④란의 업무분야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제3호가목의 건설공사 업무 중 해당 업무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의 철수구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배치계획에 따른 배치완료 시점까지 근무하고 철수한 경우에는 '완료'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철수하는 경우에는 '완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철수사유를 기재합니다. 6.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오류 또는 변동 사항을 정정 통보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입찰참가 제한된 건설기술 용역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대표자)				
제한 분야		제한 개시	년 월 일	제한 만료	년 월 일
제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조)				
제한 사유와 그 밖의 사항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3쪽 중 제1쪽)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1. 회사개요

등록번호		등록일		전문분야		관리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2. 제재처분 내용

연월일	제재종류	처분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

3.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 (금액: 백만원)

구분	합계		계획·조사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동주택·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기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완료														
진행 중														
교체율(최근 1년간)		%		배치 총원		명		교체 총원		명				

가. 완료된 용역

일련번호	용역종류	용역명	계약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사업규모)	발주청 (인허가기관)	용역비 (백만원)

작성 방법

1. 제재처분 내용은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제재 내용을 기재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수행 현황의 교체율, 배치 총원, 교체 총원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에 한정하여 산정합니다.
3. 완료된 용역의 사업개요 중 총공사비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4. 진행 중인 용역의 공사개요 중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5. 참여기술자 현황의 구분란은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 관리번호: ○ 회사명:

나. 진행 중인 용역

용역명			용역종류	
발주청 (인허가기관)		계약기간	. . ~ . .	
사업규모			공종	

계약 및 이행 내용	구분	금액(백만원)	계약 또는 이행 기간	용역이행비율
	전체		~	%
	기성분		~	
	금차계약분		~	
	향후잔여분		~	

공사개요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 . ~ . .

○ 참여기술자 현황

구분	계	등급별				직무분야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토목	건축	기계	기타
참여인원									

일련번호	구분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	
						~	
						~	
						~	
						~	
						~	
						~	
						~	
						~	
						~	
						~	

(3쪽 중 제3쪽)

○ 관리번호: ○ 회사명:

4. 벌점

일련번호	연도/반기 구분	측정기관	용역명	부실사례	벌점	반기 평균 벌점	누계평균 벌점
발 급 용 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16.3.7.>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3. 건설기술용역개요						
도급금액	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해당연도 도급금액	원	해당연도 계약일		해당연도 준공예정일		

4. 공종별 하도급 예정계획(해당연도)

하도급할 주요 공종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 용역				
공종명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선정 방식	용역명	물량	하도급 금액		
							①하도급 부분금액(A)	②하도급 계약금액(B)	③하도급율 (B/A)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작성 방법

1. ①란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2. ②란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하수급인)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합니다.
3. ③란의 하도급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4. ①하도급부분금액 및 ③하도급율은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개정 2015.1.29.>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보조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개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보조사업비 재원별 부담내용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 예정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8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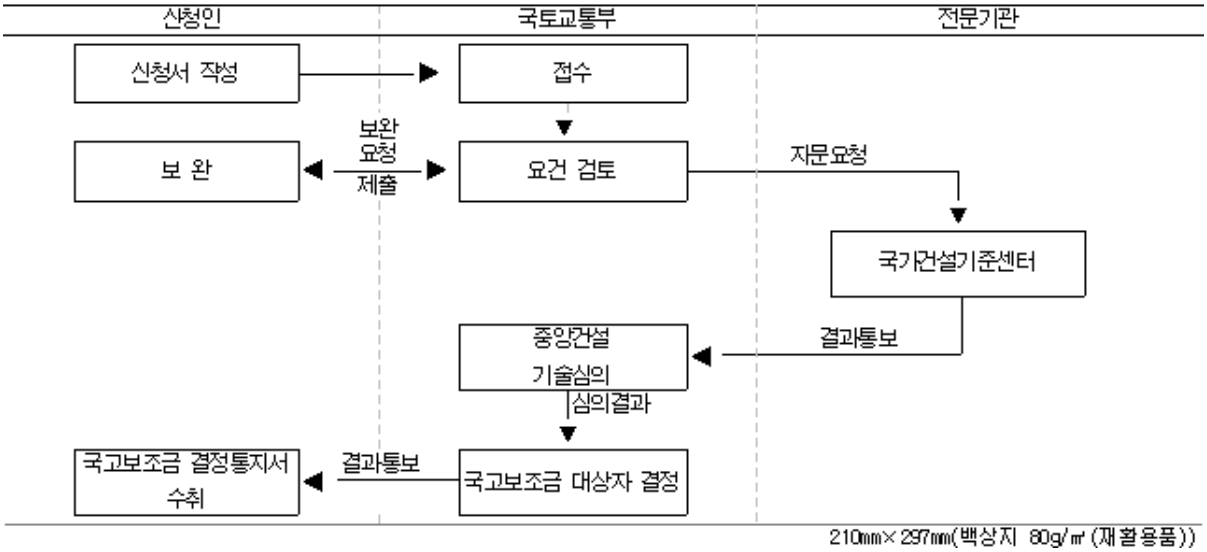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건설기준 정비계획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8.7.>

설계용역 평가표(기본설계)

용역발주청: 확인자: 발주청 (인)

관계자: 용역평가자 (인)

용역명			용역회사(대표자)	
용역번호			용역회사등록번호	
용역개요	착공	(용역기간)	과업 내용	
	준공		용역금액	
평가점수			평가 연월일	

분류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0	0.9	0.8	0.7	0.6	
1. 설계일반 (25)		◦과업 지시서 내용과 설계결과의 일치성	5						
		◦사전조사의 충실성	10						
		◦지반조사의 충실성	10						
2. 설계 성과품 품질 (45)	성과품 (28)	◦구조 및 수리 계산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설계도면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보고서의 적정성 및 충실성	7						
		◦성과품간의 내용 불일치 발생 건수	7	없음	5건 이하	6~8건	9~11건	12건 이상	
	설계 내용 (17)	◦구조형식 및 공법의 적정성	6						
		◦주요 자재 및 장비의 사용성	6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공사비절감·시공성·유지관리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의 적극성	3						
		◦친환경 설계 여부	2						
3. 대민·대관 업무 (20)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과의 의견청취 및 협의 결과의 반영 등	5						
		◦발주청 요청사항 응답의 충실성	10						
		◦설계자문 결과 적용의 적정성	5						
4. 설계 과정 충실도 (10)	상생/협력	◦하도급 계획 이행의 충실성	4						
	기술자 관리	◦기술자 투입 적정 여부 및 기술자 교체에 따른 설계추진 지장 여부(교체시 기술자 자격, 경력이 착수계 기준 동등 이상) ◦참여 기술자의 각종 회의, 심의, 보고, 설계검토 등의 성실한 참여 여부	3	없음(성실)		일부 지장		지장 많음	
				1.0		0.8		0.6	
	일정 관리	◦설계 관련 일정의 준수 여부(방침, 자문,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성과품, 보고 및 요청사항 기한 등)	3	준수		일부 지연		자주 지연	
				1.0		0.8		0.6	

비 고

1. 발주청은 발주청 및 용역의 특성 등 필요에 따라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분야(배점)을 30%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세부평가항목이 대상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배점을 동일분류 내 타 항목으로 배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발주청 :

용역명		건설기술용역업자	회사명: (대표:)
용역기간			등록번호: 소재지:
용역 금액	천만원(낙찰률 %)	평가 연월일	

1. 건설기술용역업자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평가자	평균
총계		100				
회사	소계[(①+②+③)×80%]	80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및 운영체계	30				
	② 건설사업관리현장 업무지원체계	20				
	③ 기술지원체계	50				
④ 참여기술자 평가(점수×20%)		20	※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 평균점수			

2.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 기술지원기술자별로 평가하되, 참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기술자는 제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무 분야	등급
직책	용역 참여기간 ~ (개월)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자		평가자	평균
총계		100				
서류평가	소계[(⑤+⑥+⑦)×80%]	80				
	⑤ 일반행정 업무 처리 내용	35				
	⑥ 시공관리 업무 내용	40				
	⑦ 기술적 업무 수행 내용	25				
⑧ 현장 시공 상태		20				
⑨ 가감점(기술개발, 신기술, 벌점 및 재해 발생 등)		±5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설계용역 평가 총괄표

발주관서명:

순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구분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업자	대표자	

210mm×297mm(백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총괄표

발주관서명:

순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구분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업자	대표자	

210mm×297mm(백

시공평가 총괄표

발주관서명: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회사	대표자	

210mm×297mm(백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법인 (주민)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공사명 또는 용역명	③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점검수 합계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점검수합계는 해당 반기에 측정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점검에 대하여 해당 업체별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점검수를 집계하여 적습니다(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점검수를 적어야 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6.3.7.>

발신기관명

수신자 **수탁기관의 장**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년도 반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③ 공사명 또는 용역명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공사(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 (연월일)	⑤ 점검종류	⑥ 부실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⑧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

.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건축사업, 측량업,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 등)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감사원감사·자체감사·시공실태점검·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⑧란의 건설사고발생관련 여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를 기재합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5. 25.>

점검요원증

소속:

직급:

성명:

증 명 사 진
(3.5cm×4.5cm)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90㎜×60㎜[인쇄용지(특급) 196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점검방문 일지

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	공사명: 현장위치: 발주기관(건축주): 공사규모:
② 방문 일시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 방문 근거 및 목적	
④ 업무 수행내용	
⑤ 지시사항 또는 특기사항	
⑥ 방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⑦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확인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 방법

1. ③란의 방문 근거 및 목적에는 방문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지시명령 또는 행정계획과 방문 목적을 적습니다.
2. ④란의 업무 수행내용에는 업무수행 내용을 개략적으로 적습니다.
3. ⑥란의 방문자의 경우, 같은 목적의 방문자가 3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덧붙여야 합니다.
4. ①·⑦란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적되, 직영공사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건축주)가 적고, ②~⑥란은 방문자가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부실시공현장 표지	
위치	
발주자	
시공자	
공사명	
지적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현장으로 지적되어 시정 중인 공사입니다.	

1200mm×900mm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품질검사 대장

일련번호	연월일	시험·검사 구분	재료	시험·검사 종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검사자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확인		비고
								성명	서명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공사명: 공사기간: . . . ~ . . . 공정 : %

공종	시험·검사 종류(재료)	시험·검사 횟수					비고
		계획	실시	합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공장인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공장개요	공장명	전화번호
	공장소재지(주소)	

보유업종 및 등록번호	건설 부문	기타

신청분야 및 등급 ("○"로 표시)	교량				건축			
	1급	2급	3급	4급	1급	2급	3급	4급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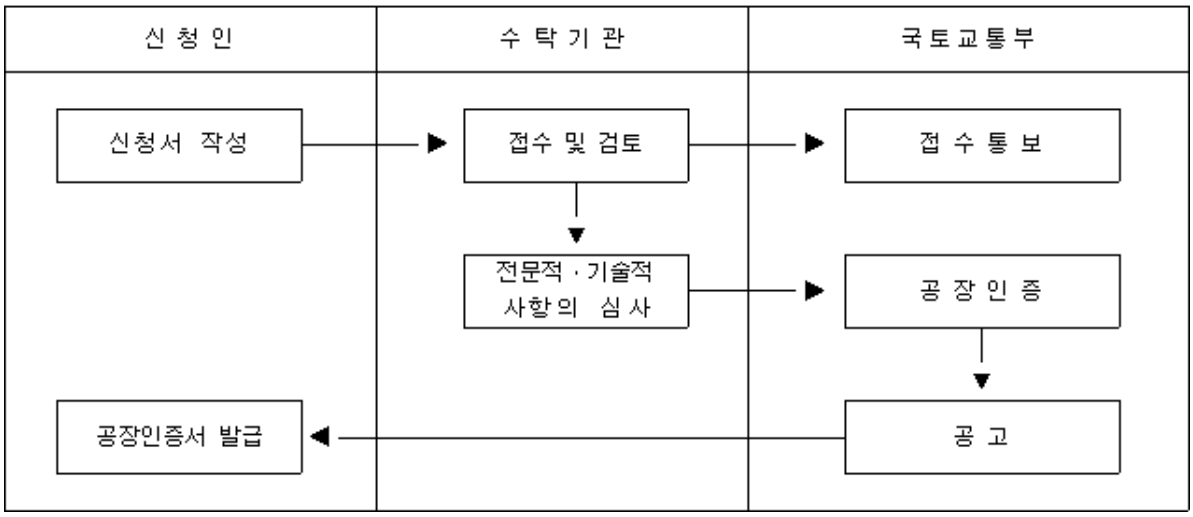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 청 인
수 탁 기 관
국토교통부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접 수 통 보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심사
공 장 인 증
공장인증서 발급
공 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제 호
(Certi. No.)

공장인증서
(FACTORY CERTIFICATE)

1. 상호 또는 법인명(Company Name):

2. 성명 또는 대표자(President's Name):

3.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Company Reg. No.):

4. 공장 소재지(Factory Address):

5. 분야(Specialty):

6. 등급(Class):

「건설기술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위의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등급을 인증합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ertifies the factory named above has been approved to manufacture steel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58)

년 월 일
(Date of Issue)

Minis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 서식]

공장인증서 발급대장

번호	연월일	구분 (인증 분야)	등급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주소 공장 소재지	날

210㎜×29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공장인증대장

인증번호:

분야 및 등급		인증일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공장명		전화번호	
공장소재지			

기재사항 변경

구분	변경 내용	변경일

210mm×297mm[백상지 120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품질검사 의뢰서

시험·검사종목			(*)	
시료명				
시료량			(채취일 : . .)	
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시료 채취 장소				
시료 채취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담당 업무	성명 (서명 또는 인)
시험 및 시방기준				
성과 이용 목적				
공사 개요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자				
시공자				
국가중요시설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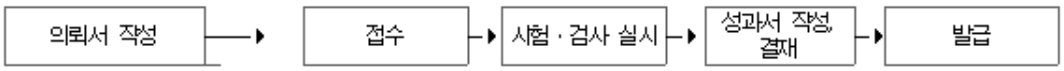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절 취 선

접 수 증

1. 접수일:
2. 의뢰 시험·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 ○ (건설기술용역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

품질검사 성적서

시료명(생산국)	()
시료 채취 장소	
성과 이용 목적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의뢰인	
국가중요시설 여부	

귀하가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해서 아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검사한 결과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결 과 -

연번	시험·검사 종목	시험·검사 방법	시험·검사 결과	책임기술자			시험·검사자	
				자격종목 및 자격증 번호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이 시험·검사 결과는 당초 의뢰 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 ○ (건설기술용역업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주소:

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적습니다.
2. 국가중요시설이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가정보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kW 이상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국,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kW 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및 댐 등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책임기술자 및 시험검사자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발신기관명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 목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8항에 따라 품질검사 대행 실적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번호	의뢰연월일	의뢰자	공사명	재료	시험·검사 종목	수수료	처리연월일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